2023년도 인천소방학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2023. 12.



2023년 인천소방학교 종합감사 처분요구

□ 총괄 현황

(단위	:	건,	천원,	명)
-----	---	----	-----	----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기관		
총계	소계	시정	주의	권고	소계	회수	환급	기타	소계	징계	경고	주의	경고
12	11	4	6	1	1 (33)	1 (33)	-	-	-	_	_	-	-

[일련번호 1]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유연근무제 출ㆍ퇴근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육지원과

[내 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의 2. 유연근무제의 기본방침²⁾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아울러, 동 예규 제4장의 4. 유연근무제 복무관리에 관한 공통사항(마. 출퇴근 관리 및 유연 근무 제한)에 따르면 ①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② 모든 유연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9시) 또는 퇴근시간(오후6시)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 ③ 부서장 등 관리자는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등에 따른 복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유연근무제)의 3. 유연근무제의 유형

⁻ 탄력근무제(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²⁾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유연근무제)의 2. 기본방침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나.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라. 근무기강의 확립

기관장(승인권자)은 출퇴근 미지정, 관련 규정 위반 등 발생 시³⁾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인천소방학교 유연근무 실시현황을 확인한바, 총 5회(2명/ 각 2회, 3회)의 유연근무제 출·퇴근 미지정 및 입력시간 지연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없 음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은

[주 의]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 등 관리자는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유연근무에 따른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바랍니다.

³⁾ 출퇴근을 출근시간보다 늦게 등록 또는 퇴근시간보다 빨리 등록하였으나 지각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일련번호 2]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외부 강의등 출강 시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수연구단

[내 용]

인천소방학교 교수연구단에서는 한국소방안전원 인천광역시 지부장의 강의 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업무시간 내 또는 주말에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에는 출장의 정의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예규 제10장(외부강의)의 3.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 관리에 따르면 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외부강의 출강 시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하고,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처리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소방학교 ○○○○에서는 동 예규 제10장에 따라 외부강의 출강 시 근무시간 내 또는 주말 구분 없이 출장 처리하여야 함에도 한국소방안전원 외부강의 5건을 출장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없 음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수연구단장)은

[주 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에 관한 직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대형버스 운전원) 복무 관리・감독 부적정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육지원과

[내 용]

소방학교에서는 대형버스(45인승) 및 행정 차량 운행·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취업 규칙으로써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지침」(이하 '복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처우를 증진하고 노무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복무지침」제2조(정의)에 따르면 '소속부서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명령하여 노무를 제공받고,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근무부서를 말하며, 제4조(성실의무)에서는 근로자는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제11조(근무상황관리)에서는 '근로자는 복무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의 근무상황부에 출근 및 퇴근 여부를 등록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이행 여부 및 출·퇴근, 근무상황부 등의 복무 사항을 확인한 바, 소방학교와 기간제 근로자는 대형버스(45인승) 운전 및 행정차량 운행 관리, 기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근로시간 08:00~ 17:00)을 체결하였다. (근로·휴게시간, 휴일, 임금, 연차휴가, 근로자 준수사항 등 포함)

그러나, 소방학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차량 운행 등의 임무 수행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공문서로써 부서장 보고 및 승인(결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복무 관리 시스템(e-사람)을 통해 관리하는 근무 상황(출·퇴근) 관리에 있어서도 출근 지정의 누락, 출근 시간의 지연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기간제 근로자 복무 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은

[주 의] ①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관리 시스템(e-사람)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출근·퇴근 관리 및 초과 근무, 출장 등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② 「산업안전관리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의 관리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여건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소방학교 도서 운영・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육지원과

[내 용]

인천소방학교에서는 교육생의 지식 함양 및 교직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도서 구입비예산을 편성하여 2014년 9월부터 힐링 도서관(제2청사 1층, 2층)을 다음 [표1]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도서 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학교 도서관리 기본계획」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하면 <u>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u>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물품 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소방학교에서는 힐링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1,802권)에 대해 교직원, 교육 입교 중인 교육생, 인천소방공무원, 그 밖에 도서관에 방문자 등이 도서를 열람하거나 필요시 대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와 수불 상황 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세부 계획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도서의 대여 신청과 반납시에 대여자, 대여 기간 준수, 위반 시 벌칙 그리고 반납 시 도서의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은

[시 정]

- ①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모품 대장의 수불상황 기록을 통하여 공용물품(소모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도서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도서 목록과 실제 보유 도서 목록을 현황화 하시고, 향후 내실 있는 힐링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의 대여 상황(대장 기재, 반납 여부) 및 도서 상태(훼손, 보수 필요)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육지원과

[내 용]

1.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는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에서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 운임, 숙박비, 실비, 일비의 항목을 지급하고, 일비는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에서는 붙임 [표1]와 같이 소속 공무원의 공용차량을 이용한 근무지내 국내 출장인 경우에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았으며,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일비를 과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급량비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의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규칙·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학교에서는 평일과 휴일에 1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특근매식비 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은

- [시 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 여비 33,800원을 회수 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의] ① 특근매식비 정산 시 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 객과적인 사실을 사전에 체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급량비(특근매식비)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인 천 소 방 본 부 권고 요구

제 목 여성 생활지도관 운영 방안 강구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육기획과

[내 용]

「인천소방학교 교육생지도규정」제2조(생활지도교수요원등) 제1항에 따르면 '교내에서 교육생이학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올바른 학과생활을 할수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생활지도교수요 원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생활지도교수요원등 중 소방위 이상은 "생활지도교수" 소방장 이하는 "생활지도관"이라 하고, 교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가 생활지도교수요원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제8조(교육기관의 운영인력기준)에 따르면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시 별도로 여성지도관을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 소방학교의 생활지도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바, 소방학교에서는 교육과정별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생활지도·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기획과 기획평가팀 남자 직원 2명(정 : 소방위, 부 : 소방교)에게 본래 사무 외 교육생 생활 평가 등 생활지도관 사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소방학교의 연도별 교육 운영 현황 중 여성 소방공무원 입교 현황은 2021년도는 106명(신임 13, 전문 93), 2022년도에는 112명(신임 23, 전문 89), 2023년도는 147명(신임 12, 전문 135)로써 과정별 교육생 중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약 8.9% ~ 15%이다.

인천 소방공무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할 때 향후 소방학교 교육과정별 여성 소방공무원의 입교 현황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교육 입교하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교육 여건 보장과 남성 소방공무원 대비 생활 평가 형평성 확보 그리고 성 비위 사고 예방을 있하여 여성생활지도관 운영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특히 2025년 소방 학교 강화군 이전 후 신임교육생의 생활관 합숙시에는 24시간의 생활지도 업무가 소요됨 으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여성 교육생 생활지도 관련 애로사항으로 「① 남성 출입이 제한된 장소의 생활 평가(탈의실, 화장실 등)에 어려움, ② 병가 발생 시 상세한 병명 및 상태 확인에 대한 제한, ③기타 여성 관련 상담, 소통 등의 불가」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육기획과장)은

[권 고] 교육생의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평가의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각종 성 비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생활지도관 운영 방안(단기·장기)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교육생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수연구단

[내 용]

소방청에서는 개인보호장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보유기준을 개인 및 기관으로 이원화하는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관리 개선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먼저, 개인별 개인보호장비 지급기준은 지급 대상을 **진압대원, 준 진압대원, 지원요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진압대원"은 최하급 소방기관에서 화재현장에 직접적으로 진입하여 인명검색, 즉 구조 및 화재진화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준진압대원"은 주 보직이 진압대원은 아니나, 시·도 실정에 따라 필요시 진압업무를 병행하는 보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한, "지원요원"은 진압대원과 준 진압대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구급, 운전, 홍보,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요원 등 진압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기관별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은 개인별 지급기준과 개인별 지급기준의 10% 내외의 예비품 확보를 합한 수량 이상으로 보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학교는 연중 최대 교육과정 인원 이상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교육자가 지급된 개인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경우는 해당 수량만큼 보유 기준에서 제외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학교 기관별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현황을 확인한바,

인천소방본부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현장대응과-9637, 2016.8.31.)과 소방학교 자체 개인 보호장비 보유기준(교육지원과-5565, 2016.09.28.)에서는 소모품 4종(방화장갑 등) 제외한 6종 각각 80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면체, 보조마스크, 방화복, 방화헬멧 4종의 장비를 보유기준보다 부족하게 보유 및 관리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등

「지속적으로 장비 지급 요청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수연구단장)은

[시 정] 기관별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장비 확보(방안 수립)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전임교수 등 사전 공모제 미실시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육지원과

[내 용]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제11조(전임교수 등 공모)에 의하면 '직무능력 강화와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소방학교 전임교수 등을 사전 공모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전임교수 등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방학교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학칙」제34조(전임교수의 자격기준) 제1항 전임교수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전임교수 선발 예행강의에 합격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강의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①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소방기관의 실무경력 2년이상 인자
- ②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소방기관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③ 담당할 분야와 관련하여 특별채용하여 소방기관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④ 기타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방본부장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또한,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학칙」제39조(예행강의) 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신규 전입 교수요원 등에 대하여는 강의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입 30일 이내에 예행강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 교직원 중 일정시간 이상의 강의를 병행하고자 하는자에 한하여 예행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에서는 사전 공모를 통하여 수준 높은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 인력풀을 확보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나 2021년 7월 이후 5회 36명의 정기인사 동안 사전공모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없 음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은

[주 의]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직무능력 및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임교수 등에 대한 사전 공모를 실시하여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교육생 학적부 관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육지원과

[내 용]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학칙」제31조(학적부의 관리)에 의하면 '학교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학적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 학사관리시스템의 전산데이터로 보관시이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학칙」제23조(직권퇴학) 제1항제3호 '생활평가 점수가 5할미만일 경우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학교장은 직권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 규정」제25조(감점 및 가점기준)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교육생은 교내외 생활에 있어서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감점기준에 의하여 감점 조치하고, 별지2의 감점처리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생활평가 감점기준 (별표5)」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에 대해 교육생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교수(교관, 생활지도관 포함)·강사·교직원 등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적 모욕 또는 폭력적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에 대한 "발생보고"를 통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에서는 ○○○년 ○월 ○○일 ○○○○○ 교육과정 중 「강사·교수요원 등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감점 사항으로 당해 건에 대해 발생보고를 작성하지 않고 감점 10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년 ○월 ○○일 ○○○○ 교육생에 대해 「무단수업 시간 위반」(40분 위반)에 대해 8점을 감점하여야 하나 학사관리시스템에 「무단결강」 10점으로 감점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없 음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은

[주 의] 관련 규정에 따라「학적부 관리」 및 「교육생 지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교육용 장비(호흡보호장비 등) 유지 ·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소방학교

관계부서 교수연구단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재물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제59조(정기 재물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을 따라 '2022년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을 시달⁴)한 바 있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1~2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①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②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③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 제330호) [별표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8.(정기검사 등) 바목 잠수장비(부력조절기, 용기, 호흡조절기 등 구성품을 포함)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⁴⁾ 市 재산관리담당관-4384(2022. 4. 28.)호

그러나 인천소방학교에서는 보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상태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물품 176점을 불용 결정하지 않거나 내용연수가경과한 물품에 대한 연장심의 대상에서 누락하여 사용중이며,

또한, 잠수장비 중 부력조절기(41개) 및 호흡기(39개)에 대한 최근 3년내에 정밀점검을 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등

없 음

조치할 사항 인천소방학교장(교수연구단장)은

[시 정] ①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정기재물조사 지침을 준수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불용 결정 등을 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잠수장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